

〈표 19〉 청구항목별 의견제시 유형

청구항목	일방의견제시형	상반의견제시형	전체
정정	39(45.3)	31(72.1)	70(54.3)
반론	8(9.3)	6(14.0)	14(10.9)
추후	2(2.3)		2(1.6)
손배	5(5.8)	1(2.3)	6(4.7)
정정+반론	3(3.5)		3(2.3)
정정+손배	12(14.0)	1(2.3)	13(10.1)
추후+손배	15(17.4)	1(2.3)	16(12.4)
정정+반론+손배	2(2.3)	3(7.0)	5(3.9)
전체	86(100.0)	43(100.0)	129(100.0)

상반의견제시형은 기사 43건 중 정정 31건, 반론 6건, 정정+반론 1건 등 보도형청구 기사는 37건(86.1%)이었으며, 손배 1건, 정정+손배 1건, 추후+손배 1건, 정정+반론+손배 3건으로 손배형청구 기사는 6건(13.9%)이었다.

5. 결론과 논의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보도기사는 언론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 당사자인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김경호, 2004; 최영재, 2004; 강정홍, 2002; 차재영, 2002; 윤재윤, 2001)하는 저널리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 제주중재부에서 다룬 조정신청 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첫째, 중심주제로 보면 사건·사고·범죄(33건, 25.6%)와 행정/정책(32건, 24.8%)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매체별로 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일간지에서는 행정/정책이 사건·사고·범죄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난 반면, TV에서는 사건·사고·범죄가 행정/정책보다 약 30%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50%가 교육분야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체별로 다루는 중심주제의 영역이 다름을 확연하게 보여주며, ‘잘못된 보도’ 논의를 떠나 다양성 측면

에서 보자면 매체별로 뉴스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겠다.

한편, 제주지역의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간(2005~2007) 대구지역의 사례(정결진, 2008)에서 사건·사고·범죄(61.8%)기사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점과도 대조적이다. 참고로 2007년 중앙일간지 사례(최낙진, 2008)에서는 정책/행정(29.3%)이 사건·사고·범죄(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리드 기사의 가치 부여 형태에서도 매체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사 전체로는 기사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미를 표현하는 가치부여(55.0%)가 약간 높게 나왔다. 기사의 가치부여는 의미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매체유형별로 보면,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에서 가치부여 기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상·온라인 매체인 TV,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에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간지에서 가치부여 기사가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최낙진, 2008)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일간지들의 환경감시와 사회고발 기능을 우선하는 관행에서 연유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특히 개인을 상대로 한 기사에서는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하겠다.

보도태도에서도 매체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간지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45건(54.9%)으로 TV 6건(26.1%)보다 높았다. 주간지와 월간잡지 기사 모두는 비판/부정적 기사였다. 이처럼 오프라인형 인쇄매체들에서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많은 반면, 영상과 온라인형인 TV, 인터넷신문, 포털에서는 중립/양비론적 기사가 대세를 이루었다.

의견제시형태는 전체적으로 상반의견제시형보다는 일방의견제시형이 많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간지에서는 상반의견제시형(47.6%)이 높게 나왔다. TV의 상반의견제시형 기사는 3건(13.0%)에 불과했으며, 포털은 5건 모두, 인터넷신문은 1건을 제외한 13건의 기사가 일방의견제시형이었다.

셋째,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에 있어서도 매체별 차이는 나타났다. 정보원 출처가 나타나지 않는 기사 14건은 일간지가 13건(92.9%)으로 TV 1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간지에서 나타나는 기사유형인 기자석, 기자수첩과 같은 가십기사나 사설처럼 기자나 논설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작용하는 기사에서 기인한 특성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에 있어 3개이상을 활용한 매체는 일간지가 14건, TV가 1건이었다. 잡지도 2건 중 1건이 있었으나 절대 수가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특히 TV는 시청각을 주로 사용하고, 시간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인쇄매체에 비하여 정보원 출처 활용 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보인용출처는 인터넷신문, 포털, 월간잡지에서 모든 기사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반면, 이들 매체들에 비하여 일간지와 TV에서는 정보인용출처가 불명확한 기사들이 10%정도 나타났다. 정보인용출처가 명확한 것은 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동근, 2001; 이재경·김진미, 2000)인만큼 정보인용출처 불명확 기사 비율은 더욱 낮아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지역에서 실·익명처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의 하나이다. 지역의 특성상 약간의 정보만 제공되어도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에서는 그간의 실명, 익명의 구분을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실명처리 정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완전실명의 경우는 일간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성명만 밝히는 경우는 TV에서, 암호형인용은 인터넷신문과 포털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사의 실·익명 처리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도별 변화이다. 1998년까지는 완전실명 기사가 전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완전실명기사는 1999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공인(公人)으로 분류 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완전실명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3년도 이후부터는 성명만 밝히는 경우와 'A씨'와 같은 암호형인용이 많아졌다.

취재원 적사에서 익명처리는 취재원보호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보와 허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함에도 제주지역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익명처리가 많아지는 것은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기자의 책임회피, 취재의 편익 남용(이상기, 2006)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을 요구한다. 물론 익명보도는 취재원 보호 및 인격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익명보도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적절한 장치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 조정과정에서 취재원의 제한적 실명이 장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최낙진, 2008).

다섯째, 제주지역의 제목 따옴표 인용은 39건(30.2%)으로, 2007년 중앙 일간지 37.2%(최낙진, 2008) 보다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일간지로만 보면 전체 기사 82건 중 33건(40.2%)이 제목 따옴표 인용이어서 중앙 일간지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제목 따옴표 인용은 다른 매체들에 비하여 제주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직접인용구는 기사 본문에 있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제목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사 내용이 과대포장되거나 축소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다(박

재영, 2006). 반면 직접인용은 사람의 말을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체취를 가미하게 되며, 직접 관찰에 못지않은 사실로서의 설득력을 갖게 된다(송용희, 2005)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본문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직접인용부호의 사용이다. 이러한 직접인용부호의 남용은 기사 내용을 왜곡하거나 포장할 가능성을 커지게 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서 본문내용과 완전일치 하지 않은 부분일치와 완전불일치의 직접인용 따옴표 사용 기사는 43.0%였다.

다음으로 청구항목별 기사의 특성은 첫째, 매체유형별 청구항목을 보면, 오프라인형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 등은 정정, 반론 등의 보도형청구가 많았고, TV와 인터넷신문은 손배형청구가 많았다. 매체유형별 피해유형은 일간지와 주간지에서는 허위보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TV와 인터넷신문은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TV와 인터넷신문의 경우, 타 매체에 비해 기술적으로 속보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따라서 TV, 인터넷과 같은 속보성 매체와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의 연관성에 대한 추후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둘째, 최근으로 올수록 손배형청구가 많아지고 있다. 1996년까지는 정정보도 청구만 있었으며, 1997년 반론보도, 1998년 추후보도가 처음 등장했다. 이러한 보도형청구들은 200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손배청구가 도입됨에 따라 정정+반론의 보도형 병합청구 외에도 정정+손배의 손배형 병합청구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06년 이후는 손배형청구가 보도형청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는 손배형청구가 더욱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손배형청구가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중재위에서도 언론피해 대상자들의 손배형청구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셋째, 청구항목별 피해유형을 보면 편파보도, 나쁜인상유도보도, 과장보도, 오기보도 등 보도형청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허위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배형청구가 많았으며, 특히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는 대개 손배형청구로 이어졌다.

신청인유형에서 보면, 손배형청구는 개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사였다. 이익단체에서도 손배형청구가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과 종교단체 등은 모두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향후 개인과 회사의 손배형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견제시유형으로 보면, 일방의견제시형에서 상대적으로 손배형청구가 높게 나타났다, 일방의견제

시형은 상반의견제시형보다 손배형청구가 3배 가량 높게 나왔다. 상반의견제시형에서는 보도형청구가 주를 이루었다.

청구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지금은 보도형청구보다는 손배형청구가 대세이며, 향후에는 손배형청구가 기본이 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간 손배형은 국가기관과 단체보다는 개인과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간지보다는 TV와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손배형청구가 많았다. 기사내용으로 보면, 허위보도와 특히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에서, 기사형식에서는 일방의견제시형 기사에서 손배형청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제주지역 언론들의 취재 방식, 기사작성, 뉴스 편집 등 저널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를 전수조사하였음에도, 129건이라는 적은 사례 수에서 오는 내용분석 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교 분석이나 유형 분류를 할 경우 1~2건의 사례들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신청인에서 2명의 사례가 빠져 있음도 밝혀 둔다. 같은 매체, 같은 기사임에도 신청인이 각각 달라, 이 경우는 주 신청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만을 신청인 유형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실제 신청인 수는 2명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정정, 반론, 추후 등의 보도형청구와 손배 등의 손배형청구가 실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정홍(2002). 자유언론과 명예훼손. 『언론중재』, 2002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 고영철·최낙진(2006).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신문사 선정 시행 1년 평가-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신문 정책과 지원 효과』, 한국언론재단.
- 김경호(2004).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언론과 수사기 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2권 2호, pp.88~120.
- 김민남(2007). 언론조정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몇 가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부산토론회(2007.04.10) 주제논문집」. 언론중재위원회.
- 김종서(1994).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5집, 서울: 헌법재판소.
- 김진원(2001).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 혐의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중 재위원회 주최. 2001 정기세미나(8. 30) 주제논문. 언론중재위원회.
- 김창룡(2004). 언론피해구제제도 활성화방안. 「언론중재위원회 부산토론회(2004. 5. 21) 주제논문집」. 언론중재위원회.

- 남재일(2008). 언론 분쟁에 나타난 취재관행의 문제, 『언론중재』, 2008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 박재영(2006). 뉴스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 1면 머리기사 분석. 2020 미디어위원회 실 행위위원회(편).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한국언론재단, pp.147~220.
- 박재영 · 이완수(2007). 인공과 취재원 적시에 대한 한미 신문 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pp. 439~468.
- 박천일(2004). 따옴표 뒤에 숨은 언론. 조선일보, 2004. 2. 9, A48.
- 서정우(2000). 오보의 발생과 대책.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지방토론회(2000. 9. 26) 주제논문집」. 언론중재위원회.
- 송용희(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조선일보와 한겨레 사회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pp. 80~104.
- 양삼승(2000). ‘언론평해구제법’ (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 세미나(2000. 11. 23, 대전) 자료집. 언론중재위원회.
- 양재규(2007).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2007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pp.65~84.
- 윤재운(2001). 중재사례로 본 언론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2001 정기세미나(8. 30) 주제 논문. 언론중재위원회.
- 이동근(2001). 언론의 취재원 사용관행과 기사의 신뢰도. 『언론중재』, 2001년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pp.20~31.
- 이상기(2006). 신뢰도 떨어뜨리는 익명 보도의 함정. 『미디어 월드 와이드』, 47호, pp.39~41.
- 이연수(2004). 언론중재사례로 본 지역 언론. 「언론중재위원회 광주토론회(2004. 11. 5) 주제논문집」. 언론중재위원회.
- 이재경 · 김진미(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한국학 연구』, 2호, pp.160~179.
- 이준웅 · 양승목 · 김규찬 · 송현주(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pp. 64~90.
- 장호순(2003).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세미나(2003. 8. 28) 자료집. 언론중재위원회.
- 장호순(2008). 위원회 조정사례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 『언론중재』, 2008년 봄호, 언론중재위원회. pp.4~17.
- 정결진(2008). 조정 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 『언론중재』, 2008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 차재영(2002).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2002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 최낙진(2008).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지방토론회(2008. 05. 23) 주제논문집」. 언론중재위원회.
- 최영재(2004).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 신뢰도 추락 초래: 참을 수 없는 사소한 저널리즘. 『신문과 방송』, 10권, pp.58~61.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연간보고서』.
- 『2010년도 연간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